

2016년 1차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감사대상기관 및 지적사항 현황

□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인원
숲속유치원 등 2개 원	숲 속 : 2016.4.20.~4.22.<3일> 자연과아이들 : 2016.4.27.~4.29.<3일>	원당 3명

□ 지적사항 현황

유치원명	지 적 건 명	조치의견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현지 조치
숲속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경고	회수 (30,000,000원)	기관경고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경고	회수 (7,027,438원)	-	
	근로계약 및 근로소득세에 관한 사항	주의	-	-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	-	
자연과 아이들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	-	-	○
	사립유치원 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회수 (해지금액 /98,000,000원)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	-	
	유아학비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	-	-	-	○

[붙임 1] 재무감사 처분서(안)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30,000,000원
수감기관	숲속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회수요구, 기관경고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숲속유치원

내 용 :

숲속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9조(수입금의 수납), 제32조(지출의 원칙) 및 제33조(지출의 방법)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고 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예산편성시, 세입·세출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과목해소에 의하되, 관·항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관·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집행 품의를 해야 하고, 정당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지출 전 채주가 정당한지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숲속유치원에서는

▷ 2013학년도 유치원회계 관리 계좌를 주거래 계좌 외에 학부모부담수입 관리용 계좌를 별도계좌로 운용하면서 학부모부담 수입을 바로 입금처리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일괄이체하였고, 유치원회계 장부의 세입·세출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이 상이하야 정확한 유치원회계 총 규모 및 자금 처리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 2015~2016학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유치원 기본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할 목적이 아닌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적재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공적이용료 과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2015학년도에는 총 8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지출하여 별도 통장에 관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 2013. 3. 1. ~ 2016.3.31.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① 예산집행 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지출 시 물품 구입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각종 물품 구입 시 유치원 직원이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물품대가를 지불 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해당 직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거나 현금지급함.

② 업체 및 운전원과 차량 임차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하였으며 정당 채주가 아닌 자(차량 운전원)에게 대금을 송금함.

③ 공사를 시행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계약 및 준공 관련 서류(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준공검사서, 사진, 세금계산서 등)없이 집행함.

④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일부 지출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유치원이 시행하는 행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3~2015학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출예산 계상 근거 없이 편성되어

집행된 사적재산공적이용료 30,000,00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7,027,438원
수감기관	숲속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회수요구

제 목 : 사립유치원 보험 운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숲속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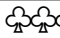
내 용 :

숲속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29조(수입금의 수납)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회계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 안내 및 제2차 보험가입 실태조사 실시(학교운영지원과-15203, 2014.12.2.)」에서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에 의하면 유치원회계는 단년도 회계이므로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는 보험은 보장기간 1년 이내의 수익금(환급금 등)이 없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숲속유치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월 900,000원, 총 45회 납부)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15.11.11.에 중도해지하면서 환급금 총액 22,694,541원 중 대출금 및 대출이자 7,027,438원을 제외한 15,666,923원만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조치 한 사실이 있었고,

- 만기 환급형 보험 가입현황

보 험 명	무배당하이라이프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
피보험자	
수 익 자	숲속유치원
계약기간	2012.02.28.~2017.02.28
월 납입 보험료	보장보험료 80,118원, 적립보험료 819,882원, 총900,000원

▷ 2014.12.2.에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이 공문 시행된 이후에도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순수 보장형 보험이 아닌 적립형 보험 등 2종의 보험을 아래와 같이 가입하여, 감사일 현재까지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다.

- 2015학년도 신규 보험 가입현황 -

보험명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기간	월 납입 보험료	보험내역	비고
무배당리치웨이 플러스저축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숲속유치원	숲속유치원	2015.03.30~ 2025.03.30.	600,000원	보장 적립 8원 599,992원	2016.4.12. 해지 및 세입조치
무배당교보프라임 플러스기업보장보험	숲속유치원 (직원13명)	숲속유치원	2015.11.20.~ 2020.11.20.	637,000원	주보험 613,100원 특약[2형] 15,300원 특약Ⅱ 8,600원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립유치원 보험 운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기존 보험은 만기 시 환급 보험료를 유치원 회계로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 보험계약 대출금 및 대출이자금액으로 세출예산에서 집행된 7,027,438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숲속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근로계약 및 근로소득세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숲속유치원

내 용 :

숲속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있다.
-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따르면 국내 주소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숲속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000 외 11명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금 및 계약 당사자의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000 외 7명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000 외 11명이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근로계약 미체결 및 사회보험 미가입자 현황 -

직	성명	채용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	연말정산 실시여부	비고
교사	000	2013.9.1~2014.2.28	X	○	○	퇴직
종일반	000	2013.3.1~2015.2.28	○	X	X	퇴직
종일반	000	2013.5.1~2013.7.31	X	○	○	퇴직
조리사	000	2013.3.4~2013.6.30	X	○	○	퇴직
조리사	000	2013.7.1~2014.9.29	X	○	○	퇴직
조리보조원	000	2013.3.14~2013.10.31	X	X	X	퇴직
종일반교사	000	2014.3.5~2015.2.28	X	○	○	퇴직
보조교사	000	2014.2.28~2014.8.24	X	X	X	퇴직
조리보조원	000	2014.3.11~2014.4.30	X	X	X	퇴직
조리사	000	2014.8.1~2014.10.1	X	○	○	퇴직
종일반교사	000	2015.3.1~2016.2.29	X	○	○	퇴직
행정직원	000	2015.3.1~2016.2.29	○	X	X	퇴직
보조교사	000	2015.2.28~2016.2.29	X	X	X	퇴직
보조교사	000	2015.3.1~2016.2.29	X	○	○	퇴직
보조교사	000	2014.3.1~현재	○	X	X	
기사	000	2015.3.2~현재	○	X	X	
부조리사	000	2015.11.14~현재	○	X	해당없음	
보조교사	000	2016.3.1~현재	○	X	해당없음	
보조교사	000	2016.3.1~현재	○	X	해당없음	
보조교사	000	2016.3.1~현재	○	X	해당없음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및 근로소득세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현재 재직중인 직원 박유순외 5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미납부한 근로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시어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숲속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숲속유치원

내 용 :

숲속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하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 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의하면 방과후 과정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보육활동과 특성화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성화 활동은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아닌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신체활동, 언어(다문화), 예술 등의 분야를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특성화 활동 참여 여부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3학년도) [북부교육지원청]』 및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급식비, 특성화 활동비, 교재·재료비, 현장학습비 등의 수익자부담교육비는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하여 징수·수납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 후 반드시 정산하여 세부사용 내역을 연2회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숲속유치원에서는 ① 2013학년도 특성화프로그램(미술/클레이/요리/신체)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조사한 신청서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감사당일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수익자부담교육비로 2014~2015학년도 교육과정(누리과정)이 아닌 특성화프로그램(다문화)을 운영하면서 전체 원아를 대상으로 12:40~14:00까지 운영하였고, 2014학년도 특성화활동비(다문화)를 수익자부담교육비 과목이 아닌 인건비 과목에서 잘못 집행한 사실이¹⁾ 있으며, 2013~2015학년도 특성화활동비를 운영 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음에도 정산 및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 하여 결과적으로 특성화활동비를 교육과정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보전하였으며, 수익자부담교육비 정산 및 연 2회 학부모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② 2016학년도 수익자부담교육비로 징수해야하는 교육활동비(특성화 활동비, 현장학습비, 교재비 및 재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여 수익자부담교육비 구분 없이 전체원아를 대상으로 징수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2014학년도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프로그램명	정당 지출과목	지출 과목	내역	집행액	비고
2014 학년도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료	다문화	수익자부담교육비	인건비	1,200,000*4월	4,800,000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익자부담경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해지금액 또는 98,000,000원
수감기관	자연과아이들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회수요구

제 목 : 사립유치원 보험 운용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자연과아이들유치원

내 용 :

자연과아이들유치원 원장 ○○○는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29조(수입금의 수납)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 ◎ 「2016년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보험관리 기준 포함) 알림(학교운영지원과-803, 2016.1.27.)」에서 사립유치원 보험 관리 기준에 의하면 유치원회계는 단년도 회계이므로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하는 보험은 보장기간 1년 이내의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고, 특히 환급식 또는 적립식 등의 수익형 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 개인연금보험은 해지를 원칙으로 하되,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유치원회계에서 지출된 전액을 반납하여 개인(원장 등)에게 권리 이전 할 수 있고, 보험의 혜택이 목적 외의 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자연과아이들유치원에서는 2012.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적립식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 98,000,000원(월 2,000,000원, 총 49회 납부)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하였으며, 2016.1.27.에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보험관리 기준 포함)이 공문 시행된 이후에도 해지 또는 개인에게 권리 이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적립식 연금보험 가입현황 -

보 험 명	무배당Free재정플랜연금보험(적립형)
피보험자	○○○
수 익 자	자연과아이들유치원
계약기간	2012.03.27.~종신(납입기간: 2012.3~2022.3, 10년납)
월 납입 보험료	주계약보험료 2,000,000원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립유치원 보험 운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기존 개인연금보험은 해지 시 해지 금액을, 권리 이전 시 기 납입보험료 98,000,000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자연과아이들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자연과아이들 유치원

내 용 :

자연과아이들유치원 원장 ○○○는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동법 시행령」 제198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의하면,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명시하고 있고, 국내 주소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

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인천시교육청)」에 의하면, 근무계약서 작성 시 연중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전(기본급, 정근수당, 교직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은 전부 급여이므로 근무계약서에 모든 급여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급여지급 시 급여는 임의로 줄 수 없으며, 근무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자연과아이들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 외 5명의 근로조건(임금)이 변경 되었는데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교직원에게 근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명절휴가비)²⁾을 지급하면서 급여대장에 해당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또한, 2015년 12월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동계특별수당) 총 3,300,000원을 ○○○ 외 11명에게 급여 지급 시 임의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 2013년 명절휴가비(○○○외 12명) : 6,500,000원
▶ 2014년 명절휴가비(○○○외 13명) : 5,900,000원
▶ 2015년 명절휴가비(○○○외 14명) : 6,000,000원

2016년 2차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감사대상기관 및 지적사항 현황

□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인원
신아유치원 등 3개 원	신아 : 2016.5.18.~ 5.20.<3일> 햇살 : 2016.5.25.~ 5.27.<3일> 열림 : 2016.6. 1~ 6. 3.<3일>	원당 3명

□ 지적사항 현황

유치원명	지 적 건 명	조치의견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현지 조치
신아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	-	
	유치원 원비 운영에 관한 사항	경고	환급 (1,000,000원)	-	
	유아학비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	-	-	-	○
햇살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	-	
열림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경고	회수 (21,661,539원)	기관경고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	-	
	수익자부담경비운영에 관한 사항	-	-	-	○

[붙임 1] 재무감사 처분서(안)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신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신아유치원

내 용 :

신아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 (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집행 품의를 해야 하고, 지출 시에는 세출예산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여부를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1:1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며,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하여 징수·수납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으며,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소액일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생복지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되 예산총칙에 반드시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도 **신아유치원**에서는

▷ 2013. 3. 1. ~ 2016.4.30.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① 예산집행 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지출 시 물품 구입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대가를 지불함.

② 업체와 통학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계약기간, 차량운행시간, 계약자 및 운전원에 대한 상세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서명날인 없이 체결하였으며, 현장학습 차량비를 지급하면서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및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았음.

③ 유치원이 시행하는 행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 및 집행하면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1,982,320원을 공통운영비 등 다른 과목에서 잘못 지출하여 실제 업무추진비 집행액과 상이하게 결산 처리한 사실이 있다.

- 2013~2015학년도 일반업무추진비 실제 집행 내역 -

(단위:원)

회계년도	예산액	결산액(A)	실제 업무추진비 지출액		차액(A-B)	비고
			지출과목	지출액(B)		
2013	5,400,000	0	공통운영비	511,640	△511,640	
2014	1,400,000	986,000	공통운영비	679,380	△793,380	
			교수학습활동비	114,000		
			업무추진비	986,000		
			소 계	1,779,380		
2015	0	0	공통운영비	677,300	△677,300	
합 계	6,800,000	986,000	합 계	2,968,320	△1,982,320	

- ▷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 나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일부 지출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 2013~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음에도 정산 및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하여 수익자부담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였고, 타비목(공통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과 전용하여 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익자부담경비를 교육비에서 부당하게 보전한 사실이 있다.

- 2013~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 -

(단위:원)

학년도	목	징수액(A)	지출액			차액(A-B)	비고(보전 과목)
			수익자부담경비	보전액	소계(B)		
2013	급식비	21,428,750	21,428,750	4,630,740	26,059,490	△4,630,740	공통운영비
	현장학습비	7,031,250	7,031,250	3,325,250	10,356,500	△3,325,250	교수학습활동비
	재료비	16,393,750	16,393,750	3,898,850	20,292,600	△3,898,850	교수학습활동비
	특성화활동비	13,821,700	13,821,700	0	13,821,700	-	
소계		58,675,450	58,675,450	11,854,840	70,530,290	△11,854,840	
2014	교통비	1,341,450	1,031,950	0	1,031,950	309,500	
	급식비	19,630,650	26,685,460		26,685,460	△7,054,810	
	현장학습비	8,000,000	15,528,000		15,528,000	△7,528,000	
	재료비	19,227,050	21,622,600		21,622,600	△2,395,550	
	특성화활동비	11,903,550	12,255,500		12,255,500	△351,950	
	원복비	798,500	3,298,500		3,298,500	△2,500,000	
소계		60,901,200	80,422,010	0	80,422,010	△19,520,810	
2015	교통비	2,360,000	2,360,000	0	2,360,000	0	
	급식비	17,336,000	17,336,000	27,660	17,363,660	△27,660	교수학습활동비
	현장학습비	10,075,000	10,075,000	1,537,480	11,612,480	△1,537,480	교수학습활동비
	재료비	18,937,000	18,937,000	2,410,060	21,347,060	△2,410,060	교수학습활동비
	특성화활동비	20,147,000	20,147,000	4,215,460	24,362,460	△4,215,460	교수학습활동비
소계		68,855,000	68,855,000	8,190,660	77,045,660	△8,190,660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환급	재정상 조치금액	1,000,000원
수감기관	신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환급요구

제 목 : 유치원 원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신아유치원

내 용 :

신아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에서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며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 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예산편성시, 세입·세출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과목해소에 의하며, 교육지원청 납입금 책정결과 제출한 경비 외에 불법 잡부금을 일체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신아유치원에서는 2014~2016학년도 유아의 입학 시에 징수 하도록 되어있는 입학금을 징수하면서, 세입예산에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재학생 중 상급반으로 진학하는 원생에게 진급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납입금(진급비) 책정 결과를 학부모 동의 및 교육청 보고를 누락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원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014~2016학년도 진급비 명목으로 징수한 1,000,000원은 해당 아동에게 환급하시기 바라며,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햇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햇살유치원

내 용 :

햇살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23조(결산)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고,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세입·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수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으며, 유치원의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집행 품의를 해야 하며, 지출시에는 세출예산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여부를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은 교당 3,000,000원, 급당 60,000원, 교직원당 70,000원으로 편성한다고 되어있으며,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 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1:1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며,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하여 징수·수납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있고,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고 해당 사업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집행 잔액은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소액일 경우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생복 리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되 예산총칙에 반드시 기재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햇살유치원에서는 2013.3.1.~2016.4.30.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 ① 2013~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의 예·결산서상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액과 장부의 과목별 누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유치원회계의 과목별 수입·지출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2015~2016학년도에 수익자부담경비 목에 편성해야 하는 물품비(원복 등)를 입학금 목에 편성·운영함.
- ② 입학금과 수익자부담경비를 운영하면서 차기연도 세입금을 수납하여 당해연도에 지출하였으며, 수익자부담경비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음에도 정산 및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하여 수익자부담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익자부담경비를 차기연도 수익자부담경비와 당해연도 교육비에서 부당하게 보전한 사실이 있음.
- ③ 예산집행 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지출 시 물품 구입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대가를 지불함.
- ④ 현장학습 차량을 운영하면서 계약금액, 계약기간, 운행차량, 운행시간에 대한 상세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업체와 연간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현장학습 차량 운행시에 운행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및 원아

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았음.

⑤ 유치원이 시행하는 행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 및 집행 하면서, 2014~2015학년도에 세출예산 계상한도액보다 과다편성하였으며, 2013~2014학년도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경비를 공통운영비 등 다른 과목에서 잘못 지출하여 실제 업무추진비 집행액과 상이하게 결산 처리한 사실이 있음.

▷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일부 지출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햇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햇살유치원

내 용 :

햇살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인천시교육청)」에 의하면, 근무계약서 작성 시 연중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전(기본급, 정근수당, 교직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은 전부 급여이므로 근무계약서에 모든 급여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급여지급 시 급여는 임의로 줄 수 없으며, 근무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계획(인천시교육청)」에 의하면, 방과후과정반 담당인력 배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 교원을 우선 배치하며 방과후 과정반 전담 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조교사 등을 채용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햇살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원장 000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급여)이 누락되었으며 000 외 3명의 근로계약서상 급여액과 실제 급여액을 다르게 지급하였고, 2014년 000 외 6명의 근로계약 체결 시 급여에서 제외되는 교원 처우개선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며, 또한 000 외 6명이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방과후 보조교사 000 외 2명은 관련 자격증 없이 채용한 사실이 있다.

【근로계약 체결 현황】

(단위:원)

직	성명	채용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급여액 (월)	실 (월) 급여액	비고
원장	000	2013.3.1.~현재	○	○	급여 누락	7,800,000	
교사	000	2013.1.~2014.2.28.	○	○	1,269,500	1,453,520	
교사	000	2013.1.~2014.2.28.	○	○	1,278,820	1,378,820	
조리사	000	2016.1.1~2016.4.9.	○	X	800,000	850,000	
방과후 보조교사	000	2013.1.~2013.9.30.	○	X	500,000	600,000	
방과후 보조교사	000	2013.10.1.~2014.2.28.	○	X	동일		
방과후 보조교사	000	2014.3.1.~2016.2.28.	○	X	동일		
방과후 보조교사	000	2013.3.1.~2014.2.28.	○	X	동일		자격증 미소지
방과후 보조교사	000	2015.3.1.~2015.9.30.	○	X	동일		
방과후 보조교사	000	2016.3.1.~현재	○	X	동일		
교사	000	2014.3.1.~2015.2.28.	○	○	2,756,700	2,246,700	차액 (교원 처우 개선비)
교사	000	2014.3.1.~2015.2.28.	○	○	1,986,400	1,476,400	
교사	000	2014.3.1.~2015.2.28.	○	○	1,986,400	1,476,400	
교사	000	2014.3.1.~2015.2.28.	○	○	1,910,400	1,400,400	
교사	000	2014.3.1.~2015.2.28.	○	○	2,025,300	1,515,300	
교사	000	2014.3.1.~2015.2.28.	○	○	1,986,400	1,476,400	
교사	000	2014.3.1.~2015.2.28.	○	○	1,800,400	1,400,400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016년 재직중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시기 바라며,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1,661,539원
수감기관	열림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회수요구, 기관주의

제 목 : 유치원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열림 유치원

내 용 :

열림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에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23조(결산)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 목과 동일구분에 의하여 작성하고,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에 들어온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세입·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수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으며, 유치원의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집행 품의를 해야 하며, 지출시에는 세출예산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여부를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은 교당 3,000,000원, 급당 60,000원, 교직원당 70,000원으로 편성한다고 되어있으며,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차입금)에서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열림유치원에서는 2013.3.1.~2016.4.30.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① 예산집행 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지출 시 물품 구입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각종 물품 구입 시 유치원 직원이 먼저 물품대가를 지불 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해당 직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거나 현금지급함.

② 업체와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 채주가 아닌 자(차량 운전원)에게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현장학습 차량비를 지급하면서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증 사본,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및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았음.

③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원장) 소유 차량 가스주입비 및 수리비 16,566,559원을 집행함.

④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원장) 소유 휴대전화 요금 3,554,980원을 집행함.

⑤ 세출예산 중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볼 수 없는 사적인 경조비와 후원금 1,5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⑥ 유치원이 시행하는 행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 및 집행하면서, 2014~2015학년도에 세출예산 계상한도액보다 과다편성하였고, 2013~2015학년도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경비를 공통운영비 등 다른 과목에서 잘못 지출하여 실제 업무추진비 집행액과 상이하게 결산 처리하였으며, 예산액보다 과다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 2013~2015학년도 유치원 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차입금을 운용하면서 수

시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 ▷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일부 지출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개인 소유 차량 가스비 16,566,559원 및 휴대전화요금 3,554,980원과 사적인 경조비, 후원금 1,540,00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조치하시기 바라며,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열림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열림 유치원

내 용 :

열림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에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인천시교육청)」에 의하면, 근무계약서 작성 시 연중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전(기본급, 정근수당, 교직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은 전부 급여이므로 근무계약서에 모든 급여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급여지급 시 급여는 임의로 줄 수 없으며, 근무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열림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000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시설관리직 000의 계약서에 근무시간에 대한 명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으며 교사 000의 근로계약서상 급여액과 실제 급여액을 다르게 지급하였고, 000 외 1명이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체결 현황】

(단위:원)

직	성 명	채용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급여액(월)	실 급여액(월)	비고
교사	000	2014.3.1.~2014.6.30.	X	○	동일		현)퇴직
시설관리직	000	2013.3.1.~현재	○	-	동일		
교사	000	2015.3.1.~2016.2.28.	○	○	1,200,000	1,387,710	현)퇴직
청소	000	2014.8.~2015.3.	○	X	동일		현)퇴직
청소	000	2015.10.26.~현재	○	X	동일		

또한, 교직원에게 근무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수당 총 49,040,930원을 지급하였고 급여대장에 해당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단위:원)

구분	명절휴가비	스승의날 격려금	성과급, 상여금	기타 격려금	합계
2013	7,722,590	800,000	9,044,000	-	17,566,590
2014	5,900,000	2,200,000	4,919,100	910,000	13,929,100
2015	7,522,620	-	7,722,620	2,300,000	17,545,240
합계	21,145,210	3,000,000	21,685,720	3,210,000	49,040,930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016년 재직중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회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차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감사대상기관 및 지적사항 현황

□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인원
신동아유치원 등 5개원	신동아 : 2016.6.15.~ 6.17.<3일> 별초롱 : 2016.6.22.~ 6.24.<3일> 성 심 : 2016.6.29.~ 7. 1.<3일> 청 송 : 2016. 7. 6.~ 7. 8.<3일> 해마루 : 2016. 7.13.~ 7.15.<3일>	원당 3명

□ 지적사항 현황

유치원명	지 적 건 명	조치의견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현지 조치
신동아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경고	-	기관경고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	-	-
별초롱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	-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	-	-	○
	유아학비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	-	-	-	○
성심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경고 주의	회수 (6,627,910원)	-	-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	시정 요구	-
	유아학비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	-	-	-	○
청송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	-	-
해마루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	-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경고	회수 (2,459,840원)	-	-

[붙임 1] 재무감사 처분서(안)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신동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기관경고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신동아유치원

내 용 :

신동아유치원 교사 ☁☁☁은 2013.3.1~2013.11.17.까지 유치원업무 총괄을 맡고 있고, 원장 ○○○은 2013.11.18.~2014.6.30.까지 유치원 업무 총괄을 맡고 있고, 원장 ☆☆☆는 2014.8.16.~2016.2.29.까지 유치원 업무총괄을 맡고, 원장 ●●●은 2016.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9조(수입금의 수납), 제32조(지출의 원칙) 및 제33조(지출의 방법)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수입원이 수납한 수납금은 수납한 날에 금융회사에 예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 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세입업무 시에 교육비 및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사전징수결정을 하여 수납자 관리를 하고 미수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및 미수납액에 대한 다음 회

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처리하여 하여야 하며,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처리를 하여야 하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집행 품의를 해야 하고, 정당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지출 전 채주가 정당한지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신동아유치원**에서는, 2013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업무를 하면서 수업료, 방과후교육비 및 수익자부담경비를 현금으로 징수하여 수입이 발생한 당일이 아닌 매월 1, 2회 유치원회계로 세입처리 하였으며, 징수금액에 대한 사전징수결정을 하지 않고 수입발생 시 수입액만큼 징수결정을 하였고, 수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납부 및 영수증을 망실한 채 수입일계표만을 보관하고 있어 미납금액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으며, 미납액에 대한 미납자 명단 관리 및 미납금 납부 독촉, 미수납액에 대한 다음 회계연도 이월처리 등을 하지 않아 정확한 유치원회계의 총 규모 및 자금 처리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 유치원 회계 지출업무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① 예산집행 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지출 시 물품 구입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있음.

② 업체와 통학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 채주가 아닌 자(차량 운전원)에게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었으며, 현장학습 차량비를 지급하면서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및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았음.

③ 매월 정기적(주1회)으로 국제문화체험교육을 하면서 업체와 계약서류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④ 공사를 시행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가 되는 계약 및 준공 관련 서류(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준공검사서, 사진, 세금계산서 등)없이 집행함.

⑤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일부 지출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기관경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경고요구】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신동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신동아유치원

내 용 :

신동아유치원 교사 ☞☞☞는 2013.3.1~2013.11.17.까지 유치원업무 총괄을 맡고 있고, 원장 000은 2013.11.18.~2014.6.30.까지 유치원 업무 총괄을 맡고 있고, 원장 ☆☆☆는 2014.8.16.~2016.2.29.까지 유치원 업무총괄을 맡고, 원장 ●●●은 2016.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따르면 국내 주소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신동아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000 외 13명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000 외 4명이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방과후보조교사 000의 급여액 및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근로계약 미체결 및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

(단위:원)

직	성 명	채용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	비고
원장	000	2013.3.1.~2013.3.31.	X	X	현) 퇴직
원장	000	2013.11.18.~2014.6.30.	X	X	현) 퇴직
원장	000	2014.8.16.~2016.2.29.	X	○	현) 퇴직
교원	000	2013.3.1.~2015.02.28.	X	○	현) 퇴직
교원	000	2013.3.1.~2014.02.28.	X	○	현) 퇴직
교원	000	2013.3.1.~2015.2.28.	X	○	현) 퇴직
교원	000	2013.3.1.~2014.02.28.	X	○	현) 퇴직
교원	000	2013.3.1.~2015.02.28.	X	○	현) 퇴직
방과후 종일반 보조교사	000	2013.5.1.~2014.5.31.	X	○	현) 퇴직
강사 및 사무	000	2013.3.1.~2013.12.31.	X	○	현) 퇴직
조리원	000	2013.3.1.~2014.6.30.	X	X	현) 퇴직
교사	000	2014.3.1.~2015.02.28	X	○	현) 퇴직
교사	000	2014.3.1.~2015.02.28.	X	○	현) 퇴직
사무	000	2014.6.1.~2014.12.31	X	X	현) 퇴직
방과후 종일반 보조교사	000	2015.3.1.~현재	○	X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 계약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016년 재직 중인 직원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별초롱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별초롱유치원

내 용 :

별초롱유치원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에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세입·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수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으며,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1:1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며, 타 비목과의 이·전용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별초롱유치원**에서는 2013. 3. 1.~ 2016. 5. 31.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 ① 각종 물품 구입 시 유치원 직원이 먼저 물품대가를 지불 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해당 직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거나 현금 지급한 사실이 있음.
- ②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업체와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및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았음.
- ③ 2014~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의 예·결산서상 수익자부담경비의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액과 장부의 과목별 누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수익자부담경비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음에도 정산 및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하여 수익자부담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였고, 2014학년도에는 타비목(공통운영비, 교수학습활동비)과 전용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

- 2014~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 -

(단위:원)

학년도	목	수입액(A)	지출액			세입·세출 결산액	차액(A-B)	비고(보전 과목)
			수익자부담경비	보전액	소계(B)			
2014	교통비	7,955,000	8,200,000	245,000	8,445,000	7,955,000	△490,000	공통운영비
	급식비	44,262,918	38,460,000	19,941,650	58,401,650	44,262,918	△14,138,732	공통운영비
	현장학습비	24,587,843	21,364,000	5,338,600	26,702,600	24,587,843	△2,114,757	교수학습활동비
	교재비	46,172,566	42,175,000	16,881,700	59,056,700	46,172,566	△12,884,134	교수학습활동비
	특별활동비	28,736,500	28,736,500	523,500	29,260,000	28,736,500	△523,500	교수학습활동비
	방과후간식비	15,568,000	15,568,000	0	15,568,000	15,568,000	0	
소계	167,282,827	154,503,500	42,930,450	197,433,950	167,282,827	△30,151,123		
2015	급식비	38,801,250	53,116,712	0	53,116,712	38,801,250	△14,315,462	
	현장학습비	1,850,000	1,926,600	0	1,926,600	1,850,000	△76,600	
	특별활동비	29,461,250	31,155,000	0	31,155,000	29,461,250	△1,693,750	
소계	70,112,500	86,198,312	0	86,198,312	70,112,500	△16,085,812		

④ 2015학년도에는 수익자부담경비 운영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캠핑비(1,850,000원)를 징수 및 집행하면서도 변경된 예산 사항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결산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일부 지출 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6,627,910원
수감기관	성심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주의요구, 시정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성심유치원

내 용 :

성심유치원 원장 ★★★은 2013.3.1~2015.2.28.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원장 □□□은 2015.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집행 품의를 해야 하며, 지출시에는 세출예산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여부를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하여야 하고 정당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지출 전 채주가 정당한지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은 교당 3,000,000원, 급당 60,000원, 교직원당 70,000원으로 편성한다고 되어있다.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성심유치원에서는 2013.3.1.~2016.5.31.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① 예산집행 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현장학습 차량비를 지급하면서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등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2013~2014년에는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있었고,

② 2014~2015학년도에는 유치원이 시행하는 행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편성 및 집행하면서 세출예산 계상한도액보다 과다편성하였고,

③ 2013~2014학년도 세출예산 중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볼 수 없는 성금 및 후원금 총 6,627,9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④ 004동 성당 소유의 강당 및 텃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설사용 계약을 하여 사용하면서 사용시간, 사용금액, 사용면적 등을 반영한 산출근거 없이 월정액으로 계약하여 지급하였으며,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을 지출하면서도 부평4동 성당과(천주교회)계량기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정확한 산출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데도 산출근거 없이 매년 월정액으로 계약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지출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성금 및 후원금 6,627,91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경고 및 주의요구】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성심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시정요구

제 목 : 사립유치원 적립금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성심 유치원

내 용 :

성심유치원 원장 ★★★은 2013.3.1~2015.2.28.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원장 □□□은 2015.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2조의 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고, 적립금의 목적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인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그런데도 성심유치원에서는 2013.4.17.부터 현재까지 총 36회에 걸쳐 월 1,000,000원을 차량 구입용 목적으로 같이 적립(총 36,000,000원)하였고, 2014학년도에는 세출예산편성없이 시설 적립금 목적으로 정기예탁금 통장을 개설하여 70,000,000원을 적립하여 관리하면서, 사전에 적립금의 목적 및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립 유치원 적립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적립금 목적으로 현재까지 적립한 적립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청송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청송 유치원

내 용 :

청송유치원 원장 ♡♡♡는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에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10조(세입·세출의 정의),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세입·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수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으며,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1:1경비

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하여 징수·수납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 후 반드시 정산하여 세부사용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청송유치원에서는 2013~2014학년도 유치원회계의 예·결산서상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액과 장부의 과목별 누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2013~2016학년도 교육경비보조금(구청지원금)을 관리·운영하면서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집행·정산한 사실이 있다.

▷ 2013. 3. 1. ~ 2016. 5. 31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① 예산집행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지출 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각종 물품 구입시 유치원 직원이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물품대가를 지불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해당 직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거나 현금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12학년도 회계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일부 건을 2013학년도 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주유비 60,000원×3건 (2012.12.27, 2013. 2.12, 2013. 2.20 현금영수증),

* 인터넷사용료 20,310원×2건 (2013. 1월~2월분 고지서)

②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업체와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및 원아의 안전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않았으며, 정당 채주가 아닌자(차량운전원)에게 대금을 송금함.

③ 2013~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음에도 정산 및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하여 수익자부담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수익자부담경비 부족분을 교육비에서 부당하게 보전한 사실이 있음.

- 2013~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 -

(단위 : 원)

구분	목	예산액	징수부(수납액)	지출부(지출액)	차액
2013학년도	급식비	25,000,000	22,900,000	30,050,155	- 7,150,155
	현장학습비	9,000,000	7,250,000	11,094,050	- 3,844,050
	특성화활동비	32,500,000	21,760,000	29,973,000	- 8,213,000
	원복비	1,000,000	1,000,000	1,161,000	- 161,000
소계		67,500,000	52,910,000	72,278,205	- 19,368,205
2014학년도	급식비	21,000,000	21,885,000	25,143,251	- 3,258,251
	현장학습비	6,300,000	6,400,000	6,448,900	- 48,900
	특성화활동비	12,250,000	12,005,000	12,635,000	- 630,000
	원복비	600,000	695,000	696,500	- 1,500
소계		40,150,000	40,985,000	44,923,651	- 3,938,651
2015학년도	급식비	20,400,000	19,145,000	21,140,624	- 1,995,624
	현장학습비	6,120,000	5,709,000	6,141,100	- 432,100
	특성화활동비	14,700,000	14,962,500	14,970,000	- 7,500
	원복비	1,200,000	1,475,000	1,476,500	- 1,500
소계		42,420,000	41,291,500	43,728,224	- 2,436,724

▷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지출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연2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해마루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해마루 유치원

내 용 :

해마루유치원 원장 ○○○은 2013.3.1.~2014.10.1.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설립자 ♠♠♠는 2013.3.1.~현재까지 회계관리를 하고있고, 원장 ▮▮▮▮는 2015.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회계사무는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집행 품의를 해야하고, 정당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며, 유치원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세입·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 수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등

과 같이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1:1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하여 징수수납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 후 반드시 정산하여 세부사용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해마루유치원에서는 2013. 3. 1. ~ 2016. 5. 31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 ① 예산집행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각종 물품 구입시 유치원 직원이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물품대가를 지불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해당 직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음.
- ② 원장 임용시 연 200만원 내에서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유치원 체크카드로 지불하였으며, 유치원회계 장부의 세입·세출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이 상이하고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액과 지출부 과목별 누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유치원 회계의 총 규모 및 자금 처리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음.
- ③ 학생의 통학 및 현장학습을 위한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 및 운전원과 중복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과 상이하게 집행되었고 세금계산서 없이 정당채주가 아닌자(차량 운전원)에게 대금을 송금함.

- 2013~2016학년도 차량 임대료 집행 내역 -

(단위 : 원)

구분	계약금액(연간)	집행액(실제)	초과집행액
2013학년도	42,600,000	44,845,000	2,245,000
2014학년도	43,200,000	43,330,000	130,000
2015학년도	44,400,000	45,650,000	1,250,000
2016학년도	16,000,000	16,710,000	710,000
소계	146,200,000	150,535,000	4,335,000

- ④ 2013~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입보다 세출이 많음에도 정산 및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하여 수익자부담경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수익자부담경비 부족분을 교육비에서 부당하게 보전한 사실이 있음.

- 2013~2015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내역 -

(단위 : 원)

구분	목	예산액	징수부(수납액)	지출부(지출액)	차액
2013학년도	급식비	87,000,000	81,426,160	84,935,340	- 3,509,180
	현장학습비	34,800,000	32,320,800	33,017,720	- 696,920
	교재비및재료비	52,200,000	48,505,360	50,210,860	- 1,705,500
	특성화활동비	48,990,000	42,166,870	45,114,000	- 2,947,130
	원복비	3,500,000	1,755,000	2,708,700	- 953,700
소계		226,490,000	206,174,190	215,986,620	- 9,812,430
2014학년도	급식비	70,200,000	68,528,250	77,804,638	- 9,276,388
	현장학습비	28,080,000	27,478,640	28,559,940	- 1,081,300
	교재비및재료비	42,120,000	41,098,540	41,247,800	- 149,260
	특성화활동비	51,150,000	41,685,000	50,504,000	- 8,819,000
	원복비	3,000,000	1,910,000	1,910,000	-
소계		194,550,000	180,700,430	200,026,378	- 19,325,948
2015학년도	급식비	81,840,000	76,074,980	76,573,167	- 498,187
	현장학습비	14,880,000	13,904,660	14,538,600	- 633,940
	교재비및재료비	52,080,000	34,742,220	34,779,900	- 37,680
	특성화활동비	54,000,000	47,002,800	47,200,000	- 197,200
	원복비	3,060,000	1,615,000	5,000,000	- 3,385,000
소계		205,860,000	173,339,660	178,091,667	- 4,752,007

▷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 등을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지출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집계표(연2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459,840원
수감기관	해마루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시정요구

제 목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해마루유치원

내 용 :

해마루유치원 원장 ○○○은 2013.3.1.~2014.10.1.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원장 ■■■■■는 2015.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따르면 국내 주소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유치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에 따르면, 방과후과정반 담당인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 교원을 우선 배치하며 방과후과정학급을 1일 8시간 또는 시간제(3~5시간)로 담당하고, 방과후 과정반 전담교사 배치가 어려울 경우 유치원 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조교사 등을 채용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해마루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임금)을 누락하였으며, 000 외 8명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시설관리직 000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급여액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월 50만원~200만원으로 기재하였고, 또한 설립자 000를 방과후교사 및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담당업무를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근무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유현선 외 14명이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근로계약 미체결 및 사회보험 미가입 현황】

(단위:원)

직	성 명	채용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사회보험 가입여부	비고
종일반교사	000	2013.3.1.~2013.7.31.	○	×	현)퇴직
종일반교사	000	2013.8.1.~2014.2.28.	×	×	현)퇴직
보조교사	000	2013.3.1.~2015.2.28.	○	×	현)퇴직
보조교사	000	2013.3.1.~2014.2.28.	×	×	현)퇴직
보조교사	000	2013.3.1.~2014.2.28.	×	×	현)퇴직
조리사	000	2013.3.1.~2014.11.30.	○	×	현)퇴직
보조교사	000	2014.3.1.~2015.2.28	×	×	현)퇴직
차량보조	000	2013.3.1.~2016.2.28.	×	×	현)퇴직
차량보조	000	2015.9.1.~현재	×	×	
차량보조	000	2015.3.1.~2015.8.31.	×	×	현)퇴직
조리사	000	2014.12.1.~현재	×	×	
조리보조	000	2016.3.1.~현재	×	×	
보조교사	000	2016.3.1.~현재	○	×	
시설관리	000	2014.10.1.~2016.2.28.	○	×	현)퇴직
보조교사	000	2015.3.1.~2016.2.28.	○	×	현)퇴직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방과후과정반을 운영하면서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정규반 담임교사가 방과후과정반 교육활동을 운영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14년~2016년 2월까지 사무직원으로 채용된 000에 대하여 근무시간 (09:00~18:00)내에 주 5회(월 16시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한글,수학) 강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급여액 외 강사료(월 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원장 000는 근무시간(09:00~18:00)내에 주 5회(월 16시간) 특성화교육 프로그램(미술) 강사계약을 체결하여 급여액 외 강사료(원아 1인당 5,000원)을 지급하여 아래와 같이 급여를 중복 지급한 사실이 있다.

【중복 급여 지급 내역】

(단위:원)

성명	업무	연도	월	근무시간	급여액	시간당 급여액	특기적성 수업시간	급여 중복지급액	비고
000	사무직	2014	12월	9:00~18:00 (8시간)	2,000,000	8,060	월 16시간	128,960	31일
		2015	1월		2,000,000	8,060	월 16시간	128,960	31일
		2015	2월		2,000,000	8,920	월 16시간	142,720	28일
		2015	3월		2,000,000	8,060	월 16시간	128,960	31일
		2015	4월		2,000,000	8,330	월 16시간	133,280	30일
		2015	5월		2,000,000	8,060	월 16시간	128,960	31일
		2015	8월		2,000,000	8,060	월 16시간	128,960	31일
		2015	9월		2,000,000	8,330	월 16시간	133,280	30일
		2015	10월		2,000,000	8,060	월 16시간	128,960	31일
		2015	11월		2,000,000	8,330	월 16시간	133,280	30일
		2015	12월		2,000,000	8,060	월 16시간	128,960	31일
		2016	1월		2,000,000	8,060	월 16시간	128,960	31일
		2016	2월		2,000,000	8,620	월 16시간	137,920	29일
소계								1,712,160	
000	원장	2016	3월	9:00~18:00 (8시간)	2,851,830	11,490	월 16시간	183,840	31일
		2016	4월		2,851,830	11,880	월 16시간	190,000	30일
		2016	5월		2,851,830	11,490	월 16시간	183,840	31일
		2016	6월		2,851,830	11,880	월 16시간	190,000	30일
소계								747,680	
합계								2,459,840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016년 재직 중인 직원의 근로계약 체결 및 사회보험에 가입하시고, 중복 지급된 2,459,840원은 유치원회계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경고요구】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차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감사대상기관 및 지적사항 현황

□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인원
성아유치원 외 2개원	성아 : 2016.9.28.~ 9.30.(3일간) 현대 : 2016.10.5.~ 10.7.(3일간) 이노필: 2016.11.15. ~11.17.(3일간)	원당 3명

□ 지적사항 현황

유치원명	지 적 건 명	조치의견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현지 조치
성아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경고	회수 (21,500,000원)	-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	-	-	○
현대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회수 (해지금액/ 19,500,000원)	-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주의	-	-	-
	유아학비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	-	-	-	○
이노필	유치원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	-	-
	유아학비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	-	-	-	○

[붙임 1] 재무감사 처분서(안)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4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1,500,000원
수감기관	성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시정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성아유치원

내 용 :

성아유치원 원장 〰〰〰은 2013.3.1.~2015.1.26.까지 유치원업무 총괄이었고, 원감 〰〰〰은 2013.03.01.~2014.02.28.까지 회계관리를 하였고, 주임 ☆☆☆는 2014.03.01.~2015.01.26.까지 회계관리를 하였고, 원장 〰〰〰은 2015.01.27.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제 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규칙」 제33조(지출의 방법)에 ‘지출은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세입·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수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성아유치원에서는** 2013~2016학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유치원 기본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할 목적이 아닌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사적재산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본당사용료(유치원 건물사용료)를 예산에 편성 매월 500,000원 (총 21,500,000원)을 설립자인 재)천주교 인천교구유지재단에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2013~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의 예결산서상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액과 장부의 과목별 누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교육 경비보조금(구청지원금)을 관리·운영하면서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집행·정산한 사실이 있다.

▷ 또한, 2013. 3. 1. ~ 2016. 8. 31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 ① 예산집행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지출 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각종 물품 구입 시 유치원 직원이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물품대가를 지불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해당 직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거나 현금 지급한 사실이 있음.
- ② 통학버스 및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업체와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및 차량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정당 채주가 아닌자(차량 운전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등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③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2013~2014학년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지출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연2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유치원 건물사용료 21,500,000원은 유치원 회계로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경고요구】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해지금액/ 19,500,000원
수감기관	현대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시정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현대유치원

내 용 :

현대유치원 원장 ○○○는 2013.3.1부터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제32조(지출의 원칙) 및 제33조(지출의 방법)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수표로 하는 방법, 금융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세입·세출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세입·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수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으며,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1:1 경비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며, 타 비목과의 아전용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으며, 개인연금보험은 해지를 원칙으로 하되,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유치원회계에서 지출된 전액을 반납하여 개인(원장 등)에게 권리 이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현대유치원에서는 2013~2015학년도 유치원회계의 예·결산서상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액과 장부의 과목별 누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세입, 세출의 정산 및 사업성 검토 없이 운영하여 부족분을 타 비목에서 부당하게 보전한 사실이 있다.

▷ 유치원 기본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할 목적이 아닌 원장의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개인연금보험을 2011.05.25. 가입하여 현재까지 매월 30만원씩(납입월수 65개월, 총 납입금액 19,500,000원)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유치원이 시행하는 행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3학년도에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고, 2014~2015학년도에 세출예산 계상한도액보다 과다 편성한 사실이 있으며,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경비를 공통운영비 등 다른 과목에서 잘못 지출하여 실제 업무추진비 집행액과 상이하게 결산 처리한 사실이 있다.

▷ 2013. 3. 1. ~ 2016. 9. 30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① 예산집행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지출 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각종 물품 구입 시 유치원 직원이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물품대가를 지불한 후, 유치원 회계에서 해당 직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거나 현금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②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업체와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 채주가 아닌자(차량 운전원)에게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사본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③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지출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연2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시정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기존 개인연금보험은 해지 시 해지 금액을, 권리 이전 시 기 납입보험료 19,500,000원을 유치원회계로 회수처리하시기 바라며

【주의요구】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현대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현대유치원

내 용 :

현대유치원 원장 ○○○는 2013.3.1부터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같은법 시행령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따르면 국내 주소를 두고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간이 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인천시교육청)」에 의하면, 근무계약서 작성 시 연중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전(기본급, 정근수당, 교직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은 전부 급여이므로 근무계약서에 모든 급여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급여지급 시 급여는 임의로 줄 수 없으며, 근무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현대유치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 김운애 외 10명의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고 연말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 체결 현황】

(단위:원)

직	성 명	채용기간	사회보험 가입여부	연말정산 실시여부	비고
조리사	000	2013.3.1.~2013.4.30.	X	X	현)퇴직
조리보조	000	2013.3.1.~2013.4.8.	X	X	현)퇴직
보조교사	000	2013.3.1.~현재	X	X	2015.10월 이후 가입
보조교사	000	2013.3.1.~2014.2.28	X	X	현)퇴직
조리보조	000	2013.5.1.~2014.2.28.	X	X	현)퇴직
조리사	000	2013.5.1.~2015.2.28.	X	X	현)퇴직
방과후 교사	000	2014.3.1.~2015.2.28.	X	X	현)퇴직
조리보조	000	2014.3.1.~2014.11.30.	X	X	현)퇴직
관리업무	000	2014.3.1.~현재	X	X	2015.10월 이후 가입
조리사	000	2014.12.1~2016.8.31.	X	X	현)퇴직
조리보조	000	2015.3.1.~2016.8.31	X	X	현)퇴직

또한, 교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수당 총 30,950,000원을 지급하였고 급여대장에 해당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단위:원)

구분	명절휴가비	휴가비	성과급, 상여금	기타 격려금	합계
2013	5,100,000	2,200,000	5,500,000	-	12,800,000
2014	3,250,000	3,200,000	-	1,500,000	7,950,000
2015	3,250,000	2,000,000	2,000,000	-	7,250,000
2016	1,600,000	-	-	1,350,000	2,950,000
합계	13,200,000	7,400,000	7,500,000	2,850,000	30,950,000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각종 수당 등 누락된 소득을 추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이노필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6. .	회신기일	2016.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이노필유치원

내 용 :

이노필유치원 교사 □□□는 2014.03.01.~2016.02.28.까지 회계관리 업무를 하였고, 원장 ★★★은 2013.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 및 제8조(차입금)에서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학교법인은 그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는 때에 한하여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일시차입 또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일시 차입은 그 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립유치원 운영관리 지침(2012~2013학년도)」 및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유치원의 세입·세출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들어온 실질적인 세입과 세출의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세입·세출 결산액은 장부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임의수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출은 예산집행 품의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는 일체의 행위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등의 기타 필요(증빙)서류를 확인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항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이노필유치원에서는 2013~2016학년도 유치원회계의 예·결산서상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액과 장부의 과목별 누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자금관리에 있어 학교 법인이 아닌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차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데도 총 103회에 걸쳐 수시로 운영자금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차입·상환한 사실이 있다.

▷ 2013. 3. 1. ~ 2016. 10. 31까지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 ① 예산집행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지출시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있음.
- ② 통학버스 차량을 임차하면서 업체가 아닌 차량운전원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면서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공제(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③ 거래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지출 건에 대해서 국세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연2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주의요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소속 원장은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사립유치원

재무감사 결과 보고 및 처분

2017. 9.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Incheon Bukbu Office of Education

[학교운영지원과]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

I 목적

- 사립유치원 회계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유치원 회계의 건전성과 효율성 도모
- 사립유치원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II 감사대상 기관 및 지적사항 현황

-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인원
7개원	2017.7.6.~8.30.(21일)	원당 3명

III 감사중점 사항

- 유치원 학비에 대한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 유치원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 각종 지원금 사용의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검토

IV 감사결과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꿈나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꿈나라유치원

내 용 :

꿈나라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3.03.23. 시행) 제11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 의하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매뉴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II. 예산·결산,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 II. 예산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1:1 경비로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하여 징수·수납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꿈나라유치원에서는 2014~2016학년도 유치원회계를 집행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와 산출기초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적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산 및 집행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고,

▷ 특성화활동비,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액의 검토 없이 운영하여 부족분을 타 비목에서 보전한 사실이 있으며,

▷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 계약 시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¹⁾을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안전 확보가 미확인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보험)가입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운전자적격여부 등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꿈나라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꿈나라유치원

내 용 :

꿈나라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에 명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 「소득세법」 제20조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되어있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인천시교육청 2014~2017년)」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중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전(기본급, 정근수당, 교직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은 전부 급여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모든 급여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급여지급 시 급여는 임의로 줄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꿈나라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 외 1명을 채용하면서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 외 4명이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직원에게 수당 총 110,500,000원을 지급하면서 급여 대장에 해당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도 해당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2014~2016년도에 누락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정산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추가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후 결과를 제출하시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꿈나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꿈나무유치원

내 용 :

꿈나무유치원 원장 ■■■■은 2014.3.1. ~ 2017.3.31.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였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013.03.23. 시행) 제11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32조 (지출의 원칙) 의하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매뉴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II. 예산·결산,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 II. 예산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1:1 경비로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하여 징수·수납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꿈나무유치원**에서는 2014~2016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를 운영하면서 급식비 목의 세입·세출예산액의 검토 없이 운영하여 부족분을 타 비목에서 보전한 사실이 있고,

▷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¹⁾을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안전 확보가 미확인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2014~2016학년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지출 건에 대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연2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보험)가입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운전자적격여부 등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꿈나무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꿈나무유치원

내 용 :

꿈나무유치원 원장 ■■■■은 2014.3.1. ~ 2017.3.31.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였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13(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꿈나무유치원에서는 2014. 3. 1. ~ 2017. 5. 7.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규정 없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고,

▷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운영위원회 자문 사항인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새빛솔금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차입금 운영 부적정)

관계기관 : 새빛솔금유치원

내 용 :

새빛솔금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차입금의 운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에서 학교법인에 한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당해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할 수 있으며 사인(私人)이 설치·경영하는 학교는 차입금을 운용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새빛솔금유치원에서는 차입금을 운용할 수 없음에도 2014.3월부터 2017.5월까지 31회에 걸쳐 차입금 명목으로 총 232,400,000원을 입금한 후 24회에 걸쳐 상환금 명목으로 총 199,630,000원을 반환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립유치원 차입금 운용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4,800,880원
수감기관	새빛솔금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시정요구

제 목 : 유치원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의 목적 외 사용)

관계기관 : 새빛솔금유치원

내 용 :

새빛솔금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의하면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및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 「지방세법」 제107조 1항(납세의무자)에 의하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새빛솔금유치원에서는 2014.3월부터 2017.3월까지 설립자, 원장 등의 과태료, 자동차보험료 등 총 4,800,88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태료 등으로 지출한 4,800,88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새빛솔금 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새빛솔금유치원

내 용 :

새빛솔금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및 지급일,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

위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 「소득세법」 제20조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되어있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인천시교육청 2014~2017년)」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중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전(기본급, 정근수당, 교직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은 전부 급여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모든 급여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급여지급 시 급여는 임의로 줄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새빛솔금융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 외 5명을 채용하면서 임금지급일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고 임의의 날에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 외 5명이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직원에게 각종 수당 총 41,371,600원을 지급하면서 급여대장에 해당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도 해당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2017년 재직 중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회보험에 즉시 가입하시기 바라며, 2014~2016년도에 누락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정산을 실시하시고, 추가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후 결과를 제출하시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200,000원
수감기관	연세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시정요구

제 목 : 유치원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의 목적외 사용)

관계기관 : 연세유치원

내 용 :

연세유치원 원장 ▷▷▷는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원감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세입세출)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하여야 하고 교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유치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기관이 시행하는 행사, 추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사적인 경조비, 친목을 위한 경비, 전별금 및 교직원(유치원장 포함)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 그런데도 연세유치원에서는 2014. 3월부터 2016. 9월까지 사적인 경조사비로 22회에 걸쳐 총 2,200,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과태료 등으로 지출한 2,200,000원을 회수하여 유치원 회계에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3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이화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현장학습 차량 계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이화유치원

내 용 :

이화유치원 원장 ○○○는 2014.3.1 ~ 2017.2.28.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였고, 원장 ■■■은 2017.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원감 ●●●는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의하면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이화유치원**에서는 2014~2017학년도 총 47건(27,060,000원)의 현장학습 차량을 임차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였고,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¹⁾을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안전 확보가 미확인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현장학습 종료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 받아 일괄 집행하였고, 정당 채주가 아닌 자(차량 운전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등 회계집행을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차량 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보험)가입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운전자적격여부 등

일련번호	2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이화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이화유치원

내 용 :

이화유치원 원장 ○○○○는 2014.3.1 ~ 2017.2.28.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였고, 원감 ●●●●는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1조(적용범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반드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20조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되어 있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인천시교육청 2014~2017년)」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중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전(기본급, 정근수당, 교직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은 전부 급여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모든 급여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급여지급 시 급여는 임의로 줄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이화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①①① 외 9명을 채용하면서 임금지급일 및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①①① 외 9명이 사회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직원에게 각종 수당 총 36,250,000원을 지급하면서 급여대장에 해당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도 해당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017년 재직 중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수정 및 사회보험 가입을 실시하시고, 2014~2016년도에 누락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정산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추가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후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엔젤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엔젤유치원

내 용 :

엔젤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32조(지출의 원칙)에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회계 운영 매뉴얼(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IV.지출,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 V. 지출에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부서에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로 집행 품의를 해야 하고, 지출 시에는 세출예산과목이 맞는지, 금액이 적정한지, 예산편성 목적과 부합여부를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정당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지출 전 채주가 정당한지 확인 후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엔젤유치원에서는** 2014~2016학년도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 ① 예산집행 시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집행품의 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고, 지출시 물품 구입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나 상세내역 및 영수증 없이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각종 물품 구입 시 유치원 원장이 카드나 현금으로 먼저 물품대가를 지불 한 후, 유치원회계에서 유치원 원장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거나 현금 지급함.
- ② 현장학습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¹⁾을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안전확보가 미확인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③ 2014~2016학년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 받은 지출 건에 대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연2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관련자에게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보험)가입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운전자적격여부 등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시정(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54,904,765원
수감기관	The큰빛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경고요구, 시정요구

제 목 : 유치원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The큰빛유치원

내 용 :

The큰빛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교사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매뉴얼 (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4년)」 II. 예산·결산, 「사립유치원 회계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2016년)」 II. 예산에 의하면 수익자부담경비는 특성화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졸업앨범비 등과 같이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1:1 경비로서 사후 정산 및 결산을 위하여 반드시 세입·세출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여야 하고, 비용은 적정하게 산정하여 징수·수납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013.03.23. 시행) 제11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The큰빛유치원에서는 2014~2016학년도 특별활동비,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를 집행하면서 세입·세출예산액의 검토 없이 운영하여 부족분을 타 비목에서 보전한 사실이 있으며,

▷ 2016학년도 회계 말 이월금 처리 및 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잘못 집행된 회계를 보완·반납하면서 세입조치를 착오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유치원 회계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별도 회계통장에 보관중인 54,904,765원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 경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	감사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기관	The큰빛유치원	처분요구일자	2017. .	회신기일	2017. .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주의요구

제 목 : 근로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 The큰빛유치원

내 용 :

The큰빛유치원 원장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교사 ■■■은 2014.3.1. ~ 현재까지 유치원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 「소득세법」 제20조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되어있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인천시교육청 2014~2017년)」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중 교원에게 지급하는 금전(기본급, 정근수당, 교직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은 전부 급여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모든 급여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급여지급 시 급여는 임의로 줄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The큰빛유치원**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 외 13명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직원에게 각종 수당 총 65,050,000원을 지급하면서 급여대장에 해당금액을 누락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 정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에도 해당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2014~2016년도에 누락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정산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추가 발생하는 근로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후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